**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표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| **체크 항목** | **그렇다** | **아니다** |
| 위조 | ① |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것이 있다. |  |  |
| 표절 | ② | 연구 과정(절차)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것이 있다. |  |  |
| ③ | 이미 발표(게재)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. |  |  |
| ④ |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(용어), 어휘(구), 문장, 단락, 그림, 표, 사진, 데이터 등을 출처에 밝히지 않고 직·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. |  |  |
| ⑤ |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(paraphrasing) 또는 요약(summarizing)을 했지만,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. |  |  |
| ⑥ |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. |  |  |
| ⑦ |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. |  |  |
| ⑧ |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했다. |  |  |
| ⑨ |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(主從)의 관계가 있다. |  |  |
| ⑩ | 타인(1인 또는 다수)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하였다. |  |  |
| ⑪ | 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시했지만, 사실은 그대로 가져다 썼다. |  |  |
| 중복게재 | ⑫ |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다. |  |  |
| ⑬ |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하였다. |  |  |
| ⑭ |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. |  |  |
| 부당저자표시 | ⑮ |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. |  |  |
| ⑯ |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. |  |  |
| 예방적 노력 | ⑰ | 외부위탁 또는 원고청탁 결과물을 검수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. |  | 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본인은 본 논문을 작성 및 발간하는 과정에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| | |
| 20 년 월 일 | | |
| 제출인: |  | (서명) |

**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편집위원회 귀중**